

울산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0가단1185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홍명호,신보섭,임웅찬,신상화,서소현,양성국,우지혜,김

근요,장준형,봉성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배지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맹수

변 론 종 결 2021. 9. 28.

판 결 선 고 2021. 10. 26.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20. 6. 9. 접수 제362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907723호)를 제기하였고, 2017. 1. 24.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03,606,770원 및 그 중 16,6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피고와 C의 자녀인 D은 2020. 2. 6. 자신의 소유이던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건물 G동 제12층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8354호로 2020. 2. 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와 C에게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20. 5. 29.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실행 예정통지(경매신청예정일 2020. 6. 11.)를 하였고, 2020. 6. 8. 변제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C과 통화를 하였다.

라. C은 2020. 6. 9.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인 1/2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36260호로 피고에게 2020. 6. 1.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며, C과 피고가 법률상 부부인 점에 비추어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2 지분을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가 임의로 1/2 지분을 C에게 명의신탁하였는 바 이는 무효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C이 피고에게 그 지분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설령 D의 C에 대한 증여가 유효할지라도, 이는 C이 자신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D은 착오를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였고, C이 피고에게 그 지분을 이전한 것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할 뿐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역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D이 C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는 말을 믿고 C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석

별지

별지목록

1. 1동의 건물표시

경상남도 양산시 동[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건물부분의 건물의 표시

12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98.2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상남도 양산시

대 19864.6㎡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1. 19,864,600분의 39,996

공유자 지분 2분의 1

양산통기소 2020년 6월 9일

결수 제36260호 갑구순위 4번

3번 지분전부매각. 끝.

